

★ 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환경시책(환경부)

연번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처(☎)
----	-----	-----	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

■ 환경정책실

1	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	<자율구매> 공공기관은 환경마크 상품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	<의무구매> •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함 - 다만, 안정적공급이 불가능한 경우,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예외 인정	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(2005.하반기)	환경경제과 (2110-6678)
2	화학물질 확인 제도 전면 도입	화학물질 수입자가 화학물질 성분내역서 제출하여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에 제출	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물질이 신규물질,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	유해화학물질관리법 (2005.12.)	화학물질안전과 (2110-7953)
3	유독물, 관찰 물질의 제조·수입신고 제도 개선	예상 수입(제도)량을 매년 신고	영업개시 시점에서 1회 신고하고 이후에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	유해화학물질관리법 (2005.12.)	화학물질안전과 (2110-7953)
4	취급제한·금지물질의 지정·관리	유독물중에서 취급제한·금지물질로 지정하여 영업허가 등 관리	유독물이 아닐지라도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급제한·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관리	유해화학물질관리법 (2005.12.)	화학물질안전과 (2110-7953)
5	자체방제계획의 수립·제출	2천톤 이상의 모든 유독물 영업자에 대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	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경우에만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	유해화학물질관리법 (2005.12.)	화학물질안전과 (2110-7953)

■ 자연보전국

1	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	<신설>	•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 <예외> - 국방·군사시설, 도로·철도·하천 등 공용·공공용시설, 생태통로 등 자연환경보전시설, 산림보호·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,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·보수 등, 대체에너지 이용·보급시설, 일정 조건	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(2005.1.1)	자연정책과 (2110-6740)
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계 속

연번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처(△)
			<p>하의 광산개발,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- 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</p> <p>• 원충구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 <예외> -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, 수목원·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, 임도 등 산림경영 관련시설, 교육·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시설, 일정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중·개축, 전력·석유 또는 가스공급시설 -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</p>		
2	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	<신설>	반달가슴곰, 사향노루, 벗돼지, 고라니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	야생동식물보호법 (2005. 2.10)	자연자원과 (2110-6744)
3	국내서식하는 뱀, 개구리 포획금지 및 수출입허가	<신설>	산개구리, 유혈목이등 국내 서식하는 뱀, 개구리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수출입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	야생동식물보호법 (2005. 2.10)	자연자원과 (2110-6746, 6747)
4	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	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194종 지정관리	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, II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 221종을 지정하여 보호·관리 ※ 허가없이 포획·채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	야생동식물보호법 (2005. 2.10)	자연자원과 (2110-6761, 6762)
5	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	조류, 포유류 보호를 위해 조수보호구 지정·관리	조류, 포유류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전체에 대해 서식처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	야생동식물보호법 (2005. 2.10)	자연자원과 (2110-6746, 6747)
6	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	산업단지 등 일부 사업 예만 환경성을 검토	• 도로, 철도, 댐, 운하, 항만 등 국가·지자체가 시행하는 5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타당성조	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(2005.1.1)	국토환경보전과 (2110-6696)

계 속



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환경시책(환경부)

연번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처(☎)
	실시		사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 - 일반국도, 지방도 등은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		

■ 대기보전국

1	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	휘발유 제조기준 중 벤젠함량을 1.5%로 규제	휘발유 제조기준 중 벤젠함량을 1.0%로 강화	대기환경보전법 (2005.1.1)	대기정책과 (2110-6777)
2	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 도입	<신설>	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유사별 환경품질등급 설정 및 공개	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(2005.1.1)	대기정책과 (2110-6777)
3	저공해자동차 판매 및 구매 의무화	<자율구매> 자율 판매 및 자율구매	<의무구매> • 연평균 판매수량 3천대 이상(승합·화물차 300대 이상)을 제작·판매하는 자는 일정 비율(환경부 고시)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급 • 1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구매 시 20% 이상 저공해차 의무 구매		대기총량제도과 (2110-7927)
4	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설정	<신설>	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설정		대기총량제도과 (2110-7927)
5	소형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	황산화물 및 먼지 (소각용량 2톤/시간 미만 100ppm, mg/Sm ³)	황산화물은 70ppm, 먼지는 80mg/Sm ³ 로 강화		대기총량제도과 (2110-7927)
6	악취방지법 시행	악취를 대기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	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던 악취를 악취방지법에서 관리하게 되고 주요공단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 등을 시·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	악취방지법 (2005.2.10)	대기관리과 (2110-6788)
7	강화된 배출 허용기준 시행	2004.12.31까지 시행 하도록 정한 배출허용기준 적용	•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시행 - 2000.10.30 예고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(암모니아 등 가스상 물질 18종, 먼지 등 입자상물질 9종) 시행	대기환경보전법 (2005.1.1)	대기관리과 (2110-6791)

연번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처(☎)
8	휘발성유기화합물 하부적하방식 개선	휘발성유기화합물을 유조차 등에싣고 내릴 때 하부로만싣고 내리도록 일률적으로 정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휘발성유기화합물 하부적하방식 관련 규정 개선 -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물질의 특성상 상온에서 고체로 되거나 점도가 커서 하부로 싣고 내리기가 곤란할 때 상부로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예외 인정 	대기환경보전법 (2005.1.1)	대기관리과 (2110-6793)
9	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장착	<신설>	2005년부터 소형 승용차 중 출고비율 10%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가 부착되어 배출가스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경고등이 켜져서 필요한 적정정비를 받을 수 있음	대기환경보전법 (2005.1.1)	교통환경기획과 (2110-6809)
10	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책임자자격요건 완화	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경력 5년 이상	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합산경력도 인정	대기환경보전법 (2005.1.1)	교통환경관리과 (2110-6857)
11	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검사업무 범위 확대	지정사업자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검사만 가능	비사업용 자동차 외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허용	대기환경보전법 (2005.1.1)	교통환경관리과 (2110-6857)
12	정밀검사 과정금 부과방식 개선	위반횟수에 따라 정액제 방식의 과정금 부과	사업자의 월평균 수익금을 기준으로 과정금을 차등부과	대기환경보전법 (2005.1.1)	교통환경관리과 (2110-6857)

■ 수질보전국

1	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	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 시행	낙동강수계 시지역,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광역시·시지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	낙동강·금강·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(2005.8.1)	유역제도과 (2110-6837)
2	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	1톤당 120원	1톤당 130원	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	유역제도과 (2110-6840)
3	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	1톤당 110원	1톤당 120원	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	유역제도과 (2110-6840)

계 속



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환경시책(환경부)

연번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처(☎)
	부과율 조정			제32조제1항 (2005.1.1)	
4	금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	1톤당 130원	1톤당 140원	금강수계물관리 및 주 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(2005.1.1)	유역체도과 (2110-6840)
5	영산강·섬 진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	1톤당 130원	1톤당 140원	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(2005.1.1)	유역체도과 (2110-6840)
6	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의 확대	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된 하천 및 호소의 인접 상류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 제한도로의 범위 등을 정함 - 팔당호주변 일반국도 제6호선 12km 등 8개지역 20개 도로구간 188.7km 지정.	•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km 등 5개 지역 8개 도로구간 98.6km를 추가로 지정함. -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km - 용담호 지방 795호선 20km, 군도 22호선 5.5km - 상사호 지방도 58호선 9.0km - 운문댐 국도 20호선 12.9km - 남강댐 국도 7호선 3.1km, 군도 18호선 18.0km - 밀양댐 지방 1050호선 6.6km ※ 13개지역 28개도로 287.3km	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3,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, 별표9의3 (2005.6.14)	산업폐수과 (2110-6845)

■ 상하수도국

1	정수기의 기준·규격 및 검사기관지정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수기 기준·규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: 냄새, 맛, 색도, 탁도, 일반세균 - 정수성능 검사시 유출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내면 합격 - 제거율 : 냄새, 맛, 탁도 (80%), 색도(70%), 일반세균($100\text{cfu}/\text{ml}$이하) - 정수기 필터 원산지 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수기 기준·규격 변경 -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: 냄새, 맛, 색도, 탁도, 클로로포름 - 건강상 유해영향물질항목(33개)은 유출수가 유입수 함유농도 이내여야 합격 - 제거율 강화: 냄새, 맛, 탁도 (90%), 색도, 클로로포름(80%) - 정수기 필터 원산지 표시 -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 원산지 증명서류 추가제출 	정수기의 기준·규격 및 검사기관지정고시 (2005.5.23)	수도정책과 (2110-6882)
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연번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처(☎)
		표시 -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 명세제출 - 필터의 표시기준 없음	- 필터의 원산지, 제조원, 교체시기 등 표시 의무화.		
2	하수 및 오수·분뇨통계 통합	하수도 통계 및 오수·분뇨통계를 별도로 발간	• 하수도 통계 및 오수·분뇨통계를 통합하여 발간 - 하수 및 오수·분뇨 통합의 추세에 맞춰 하수 및 오수·분뇨통계를 통합 발간하여 통계 활용의 편리성 및 효용성 등 제고.	(2005.1.1)	생활하수과 (2110-6885)
3	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 태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방법 확대	평가결과 최우수처리시설 운영실무자에 장관표창 실시	하수처리장 시설규모를 5단계로 구분하여 규모별 최우수처리시설에 총 5천만원씩 포상금 지급 및 운영 실무자 표창수여.	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 (2005.1.1)	생활하수과 (2110-6889)
4	토양오염의 신고	<신 설>	토양오염물질을 생산·운반·저장·취급·가공 또는 처리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·유출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.	토양환경보전법 (2005.7.1, 개정·공포일에 따라 변경)	토양수질관리과 (2110-6766)
5	오염토양 반출처리	<신 설>	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 업자가 보유한 시설에 반출 정화.	토양환경보전법 (2005.7.1, 개정·공포일에 따라 변경)	토양수질관리과 (2110-6766)
6	오염토양의 투기금지	<신 설>	오염토양의 투기 및 정화과정에서 누출·유출 행위 금지.	토양환경보전법 (2005.7.1, 개정·공포일에 따라 변경)	토양수질관리과 (2110-6766)
7	오염토양 위해성 평가	<신 설>	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정화능력이 없는 경우 오염토양을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 조정.	토양환경보전법 (2005.7.1, 개정·공포일에 따라 변경)	토양수질관리과 (2110-6766)
8	토양정화의 검증	<신 설>	일정규모 이상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정화과정 및 정화	토양환경보전법 (2005.12, 개정·공포일에 따라 변경)	토양수질관리과 (2110-6766)



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환경시책(환경부)

연번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처(☎)
			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함.		
9	토양정화업의 등록	<신설>	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함.	토양환경보전법 (2005.7.1, 개정·공포일에 따라 변경)	토양수질관리과 (2110-6766)

■ 폐기물자원국 번호

1	폐기물 감량 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확대	규모 :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자	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감량지침 준수의무 사업자에 규모에 포함 - 규모 •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자 •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자	폐기물관리법시행령 (2005.1.1)	폐기물정책과 (2110-6921)
2	음식물류폐기물 적매립 금지 제도 실시	시(市)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매립 가능	시(市)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음 - 소각·퇴비화·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 가능	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(2005.1.1)	생활폐기물과 (2110-6927)
3	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 및 품질기준 설정	<신설>	건설폐기물의 분리·선별·파쇄 등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(循環骨材)의 재활용 용도를 도로공사용, 저지대·연약지반을 메우는 성토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고 -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설계·시공지침을 마련	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4조 (2005. 1)	산업폐기물과 (2110-6936)
4	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	<신설>	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도로공사, 하수관거공사,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등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	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05. 1)	산업폐기물과 (2110-6936)

계 속

연번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처(☎)
			생산된 순환골재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천연골재의 대체재로 적극 활용		
5	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	<신설>	<p>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, 순환골재의 생산·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	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(2005.1.1)	산업폐기물과 (2110-6944)
6	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	<신설>	<p>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때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역이행실적, 자본금, 기술력 및 신인도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로 평가 	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05.1.1)	산업폐기물과 (2110-6944)
7	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	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	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 제도 이외에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·홍보를 실시하고, 시·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,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등에 대한지도·점검을 실시	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05.1.1)	산업폐기물과 (2110-6944)
8	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 능력 확인	<신설>	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, 방	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(2005.1.1)	산업폐기물과 (2110-6936)



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환경시책(환경부)

연번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처(☎)
			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폐기물 위탁		
9	EPR 대상품 목 확대	'04년 현재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 하는 제품이 유통유동 16개 제품임	'05년부터 휴대폰 및 오디오를 EPR제도에 신규 편입·관리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05.1.1)	자원재활용과 (2110-6953)



『2004환경산업정보총람』 판매안내

• 정 가 | 70,000원 • 구입문의 | 02)852-2291(연합회 사무국)

*연합회 회원은 2만원 할인해 드립니다.

*자세한 세부목차는 연합회 홈페이지 "신간안내" 참조